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47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7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. 4. 5. 김진철 의원 외 20명

나. 회부일자 : 2017. 4. 7.

다. 상정일자 :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17년 4월 2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현행 조례(안 제11조)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,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에 따르면, ‘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’ 등 의회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또한, 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”에 따른 ‘국외업무여비’ 등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한 집행기준은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 하도록 하고 있고,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은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이처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같이 공개경쟁입찰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)로 계약할 경우, 현행 법

규에 따른 여비지급방식 등 집행방법에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(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) 조문을 삭제함(안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등 공무국외활동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.

2 대행업체 등 선정방식 규정의 삭제(안 제1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)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에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).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행업체(여행사 등)를 선정할 때에는 수의계약방식을 지양하고,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음(제11조).
- 한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

있는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의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며 의원이나 지방공무원 개인은 규율대상이 아니어서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주체가 될 수 없음.

- 이처럼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 국외여비의 계약방식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에도 조례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에 대한 계약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조례 제11조(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)를 삭제하여 공무국외 관련 법령상의 의원국외여비 지급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 본 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처(의정담당관)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훈령에 따라 개별 의원에게 지급된 국외여비를 대행업체 선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,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여비 지급방법에 부합되게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의원국외여비 집행상의 행정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).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진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4월 5일

발 의 자 : 김진철, 유 용, 최웅식,
문종철, 이현찬, 김구현,
유동균, 김창원, 김인호,
김광수(도봉), 허기회, 이병해,
유광상, 서영진, 김영한,
장홍순, 김희걸, 김혜련,
이승로, 맹진영, 조상호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현행 조례(안 제 11조)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,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대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에 따르면, ‘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’ 등 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또한, 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”에 따른 ‘국외업무여비’ 등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한 집행기준은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 하도록 하고 있고,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은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이처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같이 공개경쟁입찰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)로 계약할 경우, 현행 법규에 따른 여비지급방식 등 집행방법에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관계법령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제11조(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) 조문을 삭제함.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▣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▣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)

- 국외업무여비(202-03) 및 국제화여비(202-04)

가. 운임

-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한다.

다.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

-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타 :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
- 2)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)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 경쟁입찰, 제한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 계약 방식으로 해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.	<삭제>